

개정 전	개정 후
<p>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</p>	<p><u>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]를 2028년 12월 31일-----</u>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

### ■ 법률 부칙

제2조(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) ① 제8조제3항,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58조제4항, 제63조제2항·제3항, 제75조의2제1항·제3항, 제75조의4제2항, 제78조의2 본문,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